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고령, 장애,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·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,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2)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3)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및 제6조)
- 4)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(안 제7조)
- 5)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(안 제9조 및 제10조)
- 6) 중복지원 제한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)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
-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및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

다)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및 제6조)

-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운영의 정보 및 데이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

📁 '22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('22. 12. ~ '23. 3.)

- 조사대상 : 서울 거주 14~34세 청소년
- 조사방법 : 1차 설문조사(온·오프라인), 2차 심층면접(FGI)
- 가족돌봄청년 추정인원 : (서울시) 900명, (금천구) 22명

⇒ '23. 12. 29. 서울시 조례 개정 - 대상연령 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

라)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(안 제7조)

- 돌봄 지원, 생활안정, 심리정서적 지원 등 복지대상으로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함

마)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(안 제9조 및 제10조)

바) 중복지원 제한(안 제11조)

- 조례의 지원서비스와 유사한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

3) 검토 의견

- 가족돌봄 청년은 일상 가사, 환자 수발 등 돌봄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또래 사이에서의 고립감 심화, 생계유지의 어려움, 미래투자의 부족 등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.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런 가족돌봄 청년·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대상자 발굴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